

2026. 7. 1
제 1739 호



법원
공보

법원행정처

법원공보

2026년 7월 1일(수요일)

제1739호

CONTENTS

●	규칙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937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	93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941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943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945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948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	950
●	내규	세종법률문화상 포상에 관한 내규	952
●	예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956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959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961
●	신법령 목록		964

■ 규칙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62호 2026. 6. 25. 공포)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의 정원 중 65명(2급 1명, 3급 4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21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u>그 밖의 정원 중 57명(2급 1명, 3급 4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3명)</u> ③ (생 략)	② ----- ----- -----. 1. ~ 8. (현행과 같음) 9. <u>그 밖의 정원 중 65명(2급 1명, 3급 4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21명)</u> ③ (현행과 같음)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63호 2026. 6. 25. 공포)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2호서식]

법원보관금 출금(환급)명령서

법 원 코 드	재 판 부 번 호

사		건		번		호					
배		당		권		자		배당금액			
법 원 보 관 금	진행번호			출 급 금 액	원 천 정 수 세 금 액		부 가 가 치 세	세 금 공 제 후 지 급 액			
	종 류				소 득 세 주 민 세						
	납 부 자										
출		급		금		종 류					
환		급		사		유					
출		급		청		구		일			
청 구 자	성	명						전	화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우	편	번	호
	주 소										
	납부자(배당권자)와 상 이 한 이 유										
대 리 인	성	명						전	화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우	편	번	호
	주 소										
출		급		구		분		○ 원금만 지급		○ 원금 및 이자지급	
								○ 원금 및 전체이자지급		○ 이자만지급	
입금은행·계좌번호·계좌명의											
비 고											
위의 보관금을 출금(환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직위명 성 명 전자서명완료 또는 ㉠											

※ 법원보관금 출금(환급) 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64호 2026. 6. 25. 공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의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4.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및 회생·파산사건과 관련된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그 밖의 행정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 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3. (생 략) <u>3의4.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u>	제25조(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 ----- -----. 1. ~ 3의3. (현행과 같음) <u>3의4.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및 회생·파 산사건과 관련된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세 무서장, 그 밖의 행정청</u>
4. (생 략) ② · ③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65호 2026. 6. 25. 공포)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탁금 운용수익금”을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탁금 운용수익금”은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으로, “공탁금평균잔액”은 각각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평균잔액”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각 보관은행의 법원보관금 중 평균잔액이 200억 원 미만인 법원의 법원보관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위원회는 제20조 및 제2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법원보관금 출연금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납부 받아, 해당 출연금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 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 ----- 공탁금 및 법 원보관금 운용수익금-----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 --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평균잔액----- ----- -----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평균잔액----- -----.
〈단서 신설〉	다만, 각 보관은행의 법원보관금 중 평균잔액이 200억 원 미만인 법원의 법원보관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66호 2026. 6. 25. 공포)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인천지방법원란 및 광주지방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인천		등기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수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서해구 (단, 상업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인천광역시 전지역)
		강화	"	강화군
	부천	등기과	경기도	부천시
		김포	"	김포시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광주		등기국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담양	"	담양군
		곡성	"	곡성군
		화순	"	화순군
		강진	"	강진군
		영암	"	영암군
		나주	"	나주시
		함평	"	함평군
		무안	"	무안군
		영광	"	영광군
		장성	"	장성군
		완도	"	완도군
		진도	"	진도군
	순천	등기과	"	순천시
		구례	"	구례군
		광양	"	광양시
		여수	"	여수시
		고흥	"	고흥군
		보성	"	보성군
	목포	등기과	"	목포시, 신안군
	장흥	등기계	"	장흥군
	해남	"	"	해남군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이상 생략〉					〈이상 생략〉				
인천		등기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단, 상업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인천광역시 전지역)	인천		등기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수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제물포구, 영종구, 김단구, 서해구(단, 상업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인천광역시 전지역)
		강화	"	강화군			강화	"	강화군
	부천	등기과	경기도	부천시		부천	등기과	경기도	부천시
		김포	"	김포시			김포	"	김포시
〈중간 생략〉					〈중간 생략〉				
광주		등기국	광주광역시	전지역	광주		등기국	전남 광주광역시 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군
		담양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	"	담양군
		곡성	"	곡성군			곡성	"	곡성군
		화순	"	화순군			화순	"	화순군
		강진	"	강진군			강진	"	강진군
		영암	"	영암군			영암	"	영암군
		나주	"	나주시			나주	"	나주시
		함평	"	함평군			함평	"	함평군
		무안	"	무안군			무안	"	무안군
		영광	"	영광군			영광	"	영광군
		장성	"	장성군			장성	"	장성군
		완도	"	완도군			완도	"	완도군
		진도	"	진도군			진도	"	진도군
	순천	등기과	"	순천시		순천	등기과	"	순천시
		구례	"	구례군			구례	"	구례군
		광양	"	광양시			광양	"	광양시
		여수	"	여수시			여수	"	여수시
		고흥	"	고흥군			고흥	"	고흥군
	목포 장흥 해남	보성	"	보성군		목포 장흥 해남	보성	"	보성군
		등기과	"	목포시, 신안군			등기과	"	목포시, 신안군
		등기계	"	장흥군			등기계	"	장흥군
		"	"	해남군			"	"	해남군
〈이하 생략〉					〈이하 생략〉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67호 2026. 6. 25. 공포)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최초의 90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2제4호의2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최초로 휴직하는 법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2제4호의2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90일에서 종전의 가족돌봄휴직기간을 공제하고 적용한다.

1. 2026년 1월 1일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휴직한 법관으로서 그 휴직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은 경우
2. 2026년 1월 1일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휴직 중인 법관으로서 그 휴직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은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5호에 따 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최초의 90일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68호 2026. 6. 25. 공포)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만원”을 “7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① ----- ----- 7만원----- ----- ----- -----.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 ----- ----- ----- --- 제6호----- ----- ----- ----- -----.

내규

세종법률문화상 포상에 관한 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143호 2026. 6. 26. 결재)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법률문화상(‘Sejong Award for Legal Excellence’, 이하 ‘이 상’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상의 포상에 관하여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원표창내규」에 따른다.

제3조(포상 주체) 이 상의 포상은 대법원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상자의 선발과 포상을 국내외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포상 대상) 이 상의 포상 대상은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법의 지배(Rule of Law) 확립에 기여
2. 법률 문화 창달·보급 및 사법제도 발전에 기여
3.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법접근성 향상에 기여
4. 국제적 사법교류 및 협력 확대에 기여
5. 그 밖에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 이념을 실천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5조(포상 주기) 이 상은 격년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이 상의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추천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 국회사무총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각 지방변호사회장
2.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법학과를 두는 단과대학의 장
3.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의 장 및 각급 법원의 장
4.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민본적 법치주의 이념을 알리기 위하여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추천된 사람의 공적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권자는 추천에 앞서 공모를 할 수 있다.

제7조(세종법률문화상 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6조에 따라 추천받은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세종법률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학 또는 법조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2. 국제법 또는 국제 사법협력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3. 법률 분야의 공익 증진 활동에 대한 경험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이 상의 수상자 선정에 필요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국제총괄심의관 또는 국제심의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화상회의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상자 심사 및 선정) ① 위원회는 국내 또는 국외 1인(개인 또는 단체)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국외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내 1인(개인 또는 단체), 국외 1인(개인 또는 단체)을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선정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수상자가 결정된 이후 수상자에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수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수상자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④ 제3조 단서에 따라 국내외 유관기관 등과 공동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원회는 수상자를 심사 및 선정함에 있어 공동으로 시행하는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내용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수상자에게 표창장 등을 수여할 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포상이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의 취소 및 환수) ①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포상 공적사실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이 상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포상 취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 수상자에게 수여된 표창장과 패 및 부상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세종법률문화상
Sejong Award for Legal Excellence

성명/단체명
Name/Organization

본문

년 월 일
Month DD, YYYY

대 법 원 장 ○ ○ ○ ○ ○ (국문)
Chie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영문)

예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67호 2026. 6. 9.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3호가목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퇴직 후 재임용된 법관은 재임용 이후 1회 이상 연임되었을 것을 요함

제16조제1호마목2)가) 첫 번째 - 의 단서 중 “재판수당”을 “재판수당,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으로 하고, 같은 목 2)나) 두 번째 -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은 지급하고, 재판수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16조제1호바목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재판수당 및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은 지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6년 6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특수업무수당)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별 업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3.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 규칙 별표 9의 제 13호 가. 지급대상: 1회 이상 연임된 법관으로서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 <u>〈신 설〉</u> 나. (생 략)	제14조(특수업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2. (현행과 같음) 13. ----- ---- 가. ----- ----- ----- <u>* 퇴직 후 재임용된 법관은 재임용 이후 1회 이상 연임되었을 것을 요함</u> 나. (현행과 같음)
제16조(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산금 지급방법에 대해 별도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금도 해당 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1. 법관인 경우 가. ~ 라. (생 략) 마. 파 전 1) (생 략) 2) 국외파견 가) 직무파견 등의 경우(규칙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관) -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재판수당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4호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 ----- ----- ----- ----- -----.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 ----- ----- -----재판수당,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 ----- ----- -----.

현행	개정안
- (생략) - (생략) 나) 기타 국외파견 등의 경우 - (생략) -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수당은 지급한다. 다) (생략) 바. 출장 1) (생략) 2) 국외출장: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출장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재판수당은 지급한다. 사. (생략) 2. (생략)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 - (현행과 같음) -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은 지급하고, 재판수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다) (현행과 같음) 바. ---- 1) (현행과 같음) 2) ----- ----- ----- ----- -----,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재판수당 및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은 지급한다. 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68호 2026. 6. 16. 결재)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사용노무자등 관리부

사건번호

집행일시 및 장소

대표집행관 확인

일련번호	착용한 상의(조끼) 번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비 고

※ 비고란에는 노무자는 “노”, 기술자는 “기”로 기재

※ 착용한 상의(조끼) 번호란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착용한 상의(조끼) 번호를 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에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69호 2026. 6. 24.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에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해당 직급에서 이수한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을 “각”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원·등기사무직렬, 조사사무직렬”을 “법원·등기사무직렬 및 조사사무직렬”로 한다.

1. 4급으로의 승진: 5급에서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3개
2. 5급으로의 승진: 6급 및 7급에서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5개
3. 7급으로의 승진: 8급 및 9급에서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2개

제1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으로 한다.

②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은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반기별 1개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휴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및 교육 횟수의 제한 없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이수한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법원공무원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직급에서 이수한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과정은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수를 산정할 때에도 이를 인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규칙 제10조의3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 ① 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과정은 해당 직급에서 이수한 법원 공무원교육원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문교육을 말한다.	제2조의2(규칙 제10조의3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 ① ----- 법원공무원교육원 ----- -----.
② 법원·등기사무직렬, 조사사무직렬의 승진에 필요한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과정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5·6급: 전문교육과정 3개 2. 7급: 전문교육과정 2개 3. 8·9급: 전문교육과정 1개	② 법원·등기사무직렬 및 조사사무직렬 ----- -----. 1. 4급으로의 승진: 5급에서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3개 2. 5급으로의 승진: 6급 및 7급에서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5개 3. 7급으로의 승진: 8급 및 9급에서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2개
③ 사서직렬의 승진에 필요한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국립중앙도서관 교육훈련과정은 해당 직급에서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 각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법원·등기사무직렬 7급 승진임용 등) ① (생 략) ②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7급 승진후보자과정은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반기별 1개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제15조의2(법원·등기사무직렬 7급 승진임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 승진후보자과정은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반기별 1개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휴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및 교육 횟수의 제한 없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1개 교육과정을 사전에 수료할 수 있고, 장기간 휴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횟수의 제한없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신법령 목록 (2026. 6. 1. ~ 2026. 6. 15.)

법 률

법률제21712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1250	2026. 6. 2.	5
법률제2171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	"	6
법률제21714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21715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1
법률제21716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21717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21718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21719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21720호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17
법률제21721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19
법률제21722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	"	"	21
법률제2172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	"	23
법률제21724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24
법률제2172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	"	26
법률제21726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	27
법률제21727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	"	28
법률제2172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	36
법률제21729호	생명안전기본법	"	"	38
법률제21730호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47
법률제21731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49

법률제21732호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1250	2026. 6. 2.	50
법률제21733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	"	53
법률제21734호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	"	55
법률제2173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56
법률제2173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	58
법률제2173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	"	59
법률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60
법률제21739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1
법률제21740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72
법률제21741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79
법률제21742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81
법률제21743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83
법률제21744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84
법률제21745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	"	85
법률제21746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	"	87
법률제21747호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	"	90
법률제21748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	"	94
법률제21749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95
법률제2175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7
법률제2175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8
법률제2175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	"	99
법률제21753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	100
법률제2175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	"	101

법률제21755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1254	2026. 6. 9.	4
법률제21756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	5
법률제21757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21758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17
법률제21759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	"	18
법률제21760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27
법률제21761호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28
법률제21762호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29
법률제21763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39
법률제21764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40
법률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	"	41
법률제2176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	"	42
법률제21767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44
법률제21768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45
법률제21769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	"	46
법률제21770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	"	48
법률제217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49
법률제2177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0
법률제21773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	"	53
법률제2177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4
법률제21775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	"	55
법률제2177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	"	57

법률제21777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	21254	2026. 6. 9.	58
법률제2177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	"	71
법률제21779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4
법률제2178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6
법률제2178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0
법률제2178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82
법률제2178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3
법률제21784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	"	86
법률제2178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	"	88
법률제2178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0
법률제21787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	"	91
법률제21788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94
법률제21789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5
법률제21790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6
법률제21791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97
법률제2179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98
법률제21793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9
법률제21794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	"	100

조 약

조약제2631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21249	2026. 6. 1.	4
조약제2632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21250	2026. 6. 2.	102
조약제2633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	"	126
조약제263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	21252	2026. 6. 5.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636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50	2026. 6. 2.	149
대통령령제3636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4
대통령령제3636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6
대통령령제36369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8
대통령령제36370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9
대통령령제36371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6
대통령령제36372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8
대통령령제36373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9
대통령령제3637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1
대통령령제36375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5
대통령령제3637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0
대통령령제36377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	"	182
대통령령제3637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3
대통령령제3637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5
대통령령제36380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186
대통령령제3638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8
대통령령제3638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1
대통령령제36383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3
대통령령제3638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7

대통령령제36385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51 (별권1)	2026. 6. 4.	2
대통령령제36386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54	2026. 6. 9.	102
대통령령제36387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05
대통령령제3638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7
대통령령제3638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8
대통령령제3639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0
대통령령제3639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12
대통령령제3639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3
대통령령제36393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4
대통령령제3639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5
대통령령제3639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6
대통령령제3639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117
대통령령제36397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9
대통령령제36398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0
대통령령제36399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1
대통령령제3640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6
대통령령제36401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0
대통령령제36402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2
대통령령제36403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5
대통령령제3640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7

총리령

총리령제211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1250	2026. 6. 2.	199
총리령제210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1254	2026. 6. 9.	138

부 령

외교부령제160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49	2026. 6. 1.	42
국토교통부령제1585호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50	2026. 6. 2.	206
국토교통부령제1588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09
국토교통부령제1590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1
국토교통부령제1591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5
국토교통부령제1594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7
산업통상부령제1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8
중소벤처기업부령제109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0
국토교통부령제159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50 (별권1)	2026. 6. 2.	2
국토교통부령제1596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	"	4
산업통상부령제14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51	2026. 6. 4.	3
국토교통부령제1593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1252	2026. 6. 5.	14
보건복지부령제117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7
중소벤처기업부령제110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53	2026. 6. 8.	4
행정안전부령제62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69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54	2026. 6. 9.	142
법무부령제1114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1255	2026. 6. 10.	4
해양수산부령제79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국토교통부령제159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56	2026. 6. 11.	3

산업통상부령제1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56	2026. 6. 11.	4
성평등가족부령제10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보건복지부령제117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57	2026. 6. 12.	3
보건복지부령제1178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
국토교통부령제159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1258	2026. 6. 15.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4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9
법무부령제110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11
해양수산부령제798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령	"	"	12
행정안전부령제624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



2026. 7. 1. 제1739호
Supreme Court of Korea



9 772951 225009
ISSN 2951-2255